

의안번호	2217468
의 퇴 인	김교홍의원
회 답 일	2026.6.11.
추계번호	26C14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2 (암, 희귀질환 등 추적검사의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 한 특례)	○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해당 질환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한다. 1. 「암관리법」에 따른 암환자 2.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환자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및 난치성 질환 환자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4조의2 (암, 희귀질환 등 추적검사의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 한 특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암, 희귀질환 등 추적검사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안 제44조의2)

- 개정안은 암환자와 희귀질환 환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이하 “암환자 등”)가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적용하고자 함
- 이는 현행 일정 치료기간 동안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암환자 등이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요양급

여비용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

-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¹⁾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희귀질환자²⁾는 10%만을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암환자 등의 추적관찰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출과 그에 따른 국고지원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³⁾.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⁵⁾⁶⁾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행 산정특례 대상인 암환자 등이 추후에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받을 요양급여의 종류, 주기, 횟수 등에 대한 정보와 필요한데, 현 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거나 과거 추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 개정안은 추적관찰에 포함되는 검사 항목을 현행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로 한정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진료DB로부터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산정특례 기간 이후의 진료 이력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과거 진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암환자는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이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됨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산정특례를 적용하나, 상세불명 희귀질환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4) 건강보험료를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6) 2023~2025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로 실적을 반영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

-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 없음

Ⅳ. 작성자

-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제정

-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nabo.go.kr